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41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내 식품 생활 서비스 시설이 점차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군에서 주민의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마. 공동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식품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
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
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동체 육성)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군, 유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